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112
----------	--------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식사 및 영양 취약계층인 만75세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급식장소(안 제3조 ~ 제4조)
- 다. 운영 및 운영자 모집(안 제5조 ~ 제6조)
- 라.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0. 6. ~ 10. 26.

- 입법예고 기간 중 각 상임위를 대상으로 2회에 **결착결처** 진행한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제시

☞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 주요의견

- (1) 6조 2항의 우선 선정대상에 종교단체가 명시가 안되어있으므로 분명하게 보이도록 추가명시하여 주길 바람
- (2) 6조 4항의 내용은 제3조제2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제3조3항으로 표기된 바 수정필요
- (3) 기존 경로식당 사업의 대상자와 같이 노인의 연령을 만60세이상으로 동일시
- (4) 아직 만나이 도입이 안되어있으므로 모든 나이 앞에 ‘만’ 표시 필요

☞ 마포구 의견

-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 시 나온 의견을 법무팀과 검토하여 **아래과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

- (1) 기존 조문상의 비영리 단체나 법인 안에 종교단체도 포함되나, 분명하게 보이도록 추가 명시하는 것도 필요
- (2) 기존 경로식당의 대상자와 같이 노인의 연령 정의를 만60세이상으로 동일시하고 그에 따라 제3조1항3호의 표현도 수정필요
- (3) 아직 만나이 도입 및 통일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모든 나이 앞에 ‘만’ 표시가 필요
- (4) 제6조 4항의 내용 및 제2조 3호는 오타로 수정필요

원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u>65세</u>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노인 등에게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p>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u>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사람사람</u>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수정의결(2022.1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장소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지원대상), 제5조(운영)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 1. ~ 2027. 12.(60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시비보조금	-	-	-	-	-	-
	구비보조금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소계(b)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총비용(b-a)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 비용 :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 (1일 식단단가 4,000원, 주6일)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구 복지재단을 통해 후원금(1인1구좌 펀드) 모금 지속

- 후원금 목표액 : 총사업비의 30% 목표

▶ 시·구공동협력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 및 시사업으로 전환 추진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형신
연락처	02-3153-8854